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6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기타 인용조문 수정 및 용어정비를 통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세 기본 조례 안 제17조제1항 공탁 규정 삭제, 예탁으로 일원화
 -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
- 나. 구세 기본 조례 안 제39조제3항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
 - 상위법인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
되지 않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8. 27. ~ 9. 16.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10. 6)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6조”를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기한이 만료되기”를 “기한 만료일 3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제10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미납구세”를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영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를 “구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21조”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채·지방채, 사채의 등록확인증

제25조제1항제6호 중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전시”를 “이전 시”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구세확정전 보전압류)”를 “(구세확정 전 보전압류)”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공매처분 유보)”를 “(공매처분 보류)”로 하고, 제37조제1항 중 “유보하여야 한다”를 “보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보기간”을 “보류기한”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을 “전 1년 내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로 짜고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우편"이란 「우편법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u>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p> <p>② (생 략)</p>	<p>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제26조제1항 ----- -----<u>기한 만료일 3일</u> ----- -----<u>단,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p>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p>	<p>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지하는 구세 중 1매
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
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0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
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
송한 우체국의 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
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
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일반
우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
편 -----
-----일반우편
-----.

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 --
-----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영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징수유예등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

으면 -----

-----.

제1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구금고-----
----. <후단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징수유예등의 처리) ① -
-----법 제80조 및 조
례 제21조-----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징수할 수 있다.

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
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

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
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
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
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
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
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
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 확
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
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

<삭 제>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

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 5. (생략)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생략)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 이전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생략)

제28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생략)

제37조(공매처분 유보) ① 이의

-----.

1. -----공탁영수증

2. 국채·지방채, 사채의 등록확인증

3. ~ 5. (현행과 같음)

6. -----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이전시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구세확정 전 보전압류) (현행과 같음)

제37조(공매처분 보류) ① -----

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로
짜고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세무1과 안양순
연락처	02-3153-8702